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41
----------	----

제출일자 : 2007. 4. 19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의결주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 한다.

2. 제안사유

우리구 이미지(CI) 통합개발계획에 따른 이미지(CI) 개발 확정에 따라 변경된 구 심벌마크에 맞추어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

3. 주요내용

- 구기 · 문장 · 휘장 등의 모양 변경
 - 구기 : 별표 제1호
 - 문장 : 별표 제2호
 - 휘장 : 별표 제3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나. 예산조치 : 제1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 ▷ 소요예산 : 3,700천원
-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라. 입법예고 : 2007. 3. 2 ~ 3. 22(20일간) ▷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구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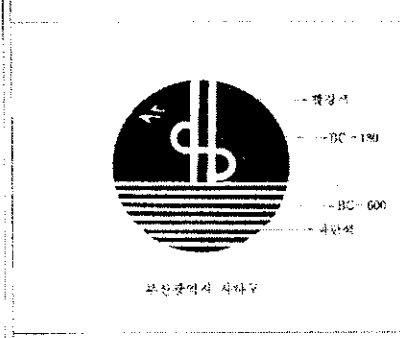
별표 제1호 내지 제3호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구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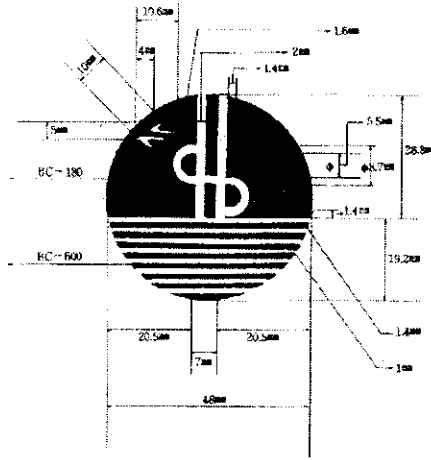
현 행	
--------	--

개 정 안	<div style="text-align: center;">  </div> <p>(구기 제작 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기의 가로와 세로의 길이는 3 : 2 비례로 한다. 2. 정기의 제작은 자수를 한 후 금색 수술을 단다. 3.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사용한다. 4. 구기의 약기는 필요에 따라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하여 활용할 수 있다.
-------------	---

[별표 제2호]

문 장

현 행



개정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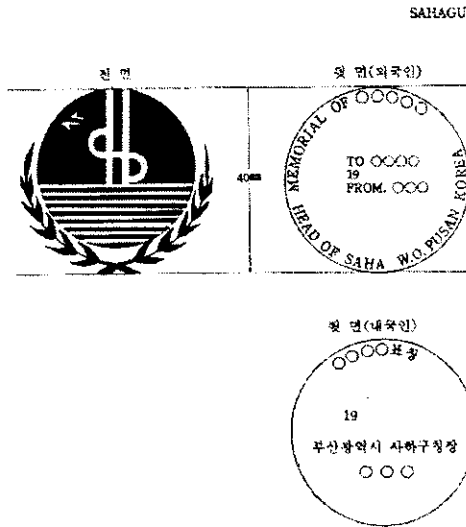
기본형	그리는 법

- 규격은 필요와 용도에 따라 적의 조절하여 사용하되, 한 변의 길이가 최소 10mm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하며, 형태나 색상 등의 변형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CD-Rom 또는 구 홈페이지에 수록된 원고용 파일을 출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 문장의 의미
 1. 전체 조형은 SAHA의 이니셜인 "S"와 사하구의 상징인 낙동강 하구 철새도래지의 고니 형상을 합성한 것으로서 사하구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상징하며, 고니의 하단의 검은 울숙도, 승학산, 사하구의 아름다운 자연을 상징하며 전체형태에 안정감을 부여하는 조형요소
 2. 고니의 힘찬 날갯짓처럼 진취적인 사하구, 무한한 성장가능성을 지닌 사하구를 형상화한 것으로 앞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는 사하구의 희망찬 미래를 보여줌
 3. 붉은색은 울숙도 새벽녘 풍광을, 녹색은 승학산과 '푸른 사하'를 상징하며 위를 향해 점차 밝아지는 색상의 단계적 변화로 아름다운 일출의 느낌을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동시에 사하구의 밝은 미래를 보여줌

[별표 제3호]

휘 장

현 행



개 정 안

